의 안 설 명 서

[제 1 호 의안] 제 21 기(2020.01.01 ~ 2020.12.31)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(현금배당 1 주당 170 원 승인 포함)

상법 제 449 조 및 당사 정관 제 44 조에 의거하여 제 21 기(2020.01.01 ~ 2020.12.31)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- ※ 제 21 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)에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「Ⅲ. 경영참고사항」중 "2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"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) 및 회사 홈페이지(http://www.ubiquoss.com)에 게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배당관련사항: 현금배당 1 주당 170 원, 배당금 총액 2,807,195,380 원

[제 2 호 의안]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상법 제 433 조 및 제 434 조에 의거하여 정관 변경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정관 변경(안)

₩7 ₩ W0	버거 ㅎ 비ㅇ	버거의 무저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 9 조의 2 (주식등의 전자등록)	제 9 조의 2 (주식등의 전자등록)	비상장 사채 등
회사는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	회사는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	의무등록 대상이
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	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	아닌 주식등에
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	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	대해서는 전자등록
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	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<u>다만,</u> 회사가_	을 하지 않을 수
	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	있도록 명확히 함
	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제 40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	제 40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	상법 개정에 따른
① ~ ④ (생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	전자투표 도입 시
<신설>	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	감사위원회 위원
	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	선임의 주주총회
	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	결의요건 완화에
	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	- · · · · 관한 내용과
	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	감사위원회 위원
	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	선임 또는 해임시
	의할 수 있다.	의결권 제한에 관한
	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	내용을 반영함
	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	(상법 제 542 조의
	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	12)
	⑦ 제5항·제6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	,
	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	
	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	
	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	
	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, 최	
	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	
	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	
	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	
	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	
	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	
	TI TEEE OTTINE	

<신설>	제 40 조의 2 (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) ① 제 40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 를 모두 상실한다.	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(상법 제 542 조의 12)
<부칙>	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제 2 조 (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 40 조 제 5 항 제 7 항 및 제 40 조의 2 제 1 항의	

[제 3 호 의안] 이사 선임의 건

상법 제 382 조 및 당사 정관 제 30 조에 의거하여 사내이사 1 명의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이사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
이상근	1960.08	사내이사	3 년	재선임	□ 국민대학교 전자공학 석사□ (前) 일진, 두루넷, 쎄븐웨이브□ (現) 유비쿼스홀딩스 대표이사

[제 4 호 의안]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

상법 제 542 조의 12 제 2 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의 분리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이사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
김남만	1967.10	사외이사	2 년	재선임	□ 고려대학교 MBA □ (前) 한영회계법인 전무,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□ (現) 인덕회계법인 회계사

(*)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 후 재선임하는 방식으로 분리 선임

[제 5 호 의안]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상법 제 542 조의 12 및 당사 정관 제 40 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2 명의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감사위원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
김경민	1958.03	사외이사인 감사위원	2 년	재선임	□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□ (前) 산업자원부, 법무법인 남명□ (現) 법무법인 진명 변호사
전상용	1971.03	사외이사인 감사위원	2 년	재선임	□ KAIST 화학과 박사□ (前) MIT 연구원, GIST 정교수□ (現) KAIST 생명과학과 정교수

[제 6 호 의안]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상법 제 388 조 및 당사 정관 제 34 조에 의거하여 제 22 기(2021.01.01 ~ 2021.12.31) 중 이사에게 지급할 연간 보수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전기(제 21 기) 이사보수 지급액

구 분	이사총수 (사외이사수)	보수한도액	보수지급액
제 21 기 (2020 년)	6 (3)	2,000,000,000 원	673,565,210 원

◎ 당기(제 22 기) 이사보수 한도액

구 분	이사총수 (사외이사수)	보수한도액
제 22 기 (2021 년)	6 (3)	2,000,000,000 원